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 및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수사기간 제도화〉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6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수사기간과 관련한 현행 규정	3
3.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사 및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 통제 내용을 보면,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고소장 접수·고발장 접수 등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안 제198조제1항 신설), ②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초과하면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관계인 조사 내용 및 수사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안 제198조제2항 신설), ③ 6개월이 초과할 경우 사건 당사자 요청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하고(안 제198조제3항 신설), ④ 8개월이 초과할 경우 사건 당사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 요청 및 당해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98조제4항부터 제7항 신설).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8조의3(수사기간)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신고인(이하 사건 당사자라고 함)에게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여부, 조사 날짜, 수사가 지연

현행	개정안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사자가 요청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일체를 이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첩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이 초과된 경우 당해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징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 내용을 징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수사기간과 관련한 현행 규정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제238조1)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6조의2²⁾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해야 하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³⁾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종합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및 부령인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고발 사건’인 경우에 한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판례는 수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⁴⁾

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3)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가단341 판결] 원고의 고소 사건에 구 범죄수사규칙 제 4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경찰공무원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에게 고소 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범죄수사규칙 제48조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에 3개월 이내로 규정됨.

3.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및 부령인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고소·고발 외 입건까지 확대⁵⁾하여 모든 사건 수사에 적용하는 한편,

수사기간 규정에 대한 규범력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사유 통지 의무, 수사기록 목록 제공 의무, 사건 당사자의 사건 이첩 요청 및 수사담당자 징계 요청권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죄 유형 및 개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사 지연 사유 통지, 수사기록 제공,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 및 징계 요청 등의 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간 준수를 법률에 사실상 강행규정화하려는 것인데,

오늘날 범죄 유형과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

5) 자수, 진정, 타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내사 등을 통해 공식 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등을 포괄함.

화되고 있는바, 마약범죄, 부정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유형,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 피해 규모 및 사건 관계인 수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거 수집, 사건 관계인 조사, 혐의 입증 등 수사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또한, 동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수사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수사를 종료하도록 하는바, 복잡하고 고도화된 범죄일수록 수사 업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수사 지연 사유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경우 수사 목적 달성 및 피해자 보호에 차질을 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98조의3제2항은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이후 1개월마다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신고인 등 사건 당사자에게 ①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여부, ② 조사 날짜, ③ 수사가 지연된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사준칙」 제12조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⁶⁾ 「경찰수사규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칙」 제11조는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이후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⁷⁾ 현재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상향 규정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의 알 권리 등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통지 대상에 ‘피의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⁸⁾에 피의자가 ①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여부, ② 조사 날짜, ③ 수사 지연의 구체적 이유 등을 알게 될 경우 수사기밀 유출,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 수사 진행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7)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8)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도 수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수사 지연시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비공개정보로 규정·인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98조의3제3항은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도과하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신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요청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⁹⁾

이에 대해 판례는 비공개 사유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공개의 이익과 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¹⁰⁾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기록 목록’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다고 판시한바,¹¹⁾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건 당사자에는 ‘피의자’도 포함되는데, 피의자에게 사건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회유·보복 시도 등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임.

넷째, 장기간 수사 지연을 이유로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을 통해 수사기관별 수사 가능 범위를 구분한 현행 형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98조의3제4항은 수사 개시 후 8개월이 도과하면 사건 당사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사자가 요청한 수사기관으로 사건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이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¹²⁾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1)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7275 판결]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기록 목록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나 혐의입증 등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중략) 따라서 수사 중일 때 수사기록 목록을 비공개한다고 해서 원고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 등의 이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1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되며, 2020년 1월 제정되어 2020년 7월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¹³⁾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 지연을 사유로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 유형의 범죄 사건을 수사하게 되거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가 아닌 경찰,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등 현재 형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 별 직무 및 역할을 구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경우, 이첩 받은 기관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등 오히려 수사가 더욱 지연될 수 있고, 수사 지연·장기화 목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가 동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끝으로, 장기간 수사 지연을 이유로 사건 당사자가 수사담당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사기 저하 및 소극적 직무 수행을 초래함으로써 수사의 본래적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98조의3제6항 및 제7항은 수사 개시 후 8개월이 도과하면 사건 당사자는 당해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징계권자는 징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징계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간은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의 수사 의지 및 역량이나 인력 투입규모와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범죄의 유형, 사건의 복잡성, 피해 규모 및 사건 관계인 수 등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따라서 수사 지연의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수사기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사법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며, 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간의 수사를 요하는 사건을 맡을수록 담당자가 징계 요청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난이도 높은 사건의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기간에 맞추어 수사를 무리하게 종결시킬 유인이 발생함.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저하, 수사의 공정성·완결성 훼손 등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수사기간이라는 절차적

제한에 기속되어 범죄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라는 수사의 본래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수사절차에 따른 수사기간과 그 준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절차마다 적절한 통제수단을 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여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사절차별로 어떤 통제수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뿐만아니라 사건별 특수성과 난이 및 다양성에 대한 고려, 현행 형사법 체계와의 관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 수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48